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령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농기계 임대료 기준 변경,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조례명 변경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제명)
- 나. 개정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맞게 임대료 조정(안 제13조)
- 다. 농작업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13조)
- 라.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18조 ~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09.08. ~ 2020.09.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범위 미포함(기획실-9345, 2020.07.30.)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9345, 2020.07.30.)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복지과-48632, 2020.08.14.), 전부수
용(기술지원과-6050, 08.18.)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소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 및 위치와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작업 대행사업”이라 함은 군 또는 그 업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기계로 경운, 정지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에게 부과·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신기종 농기계의 보급 및 활용교육
5. 그 밖의 농기계 관련 분야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배치) 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정비 및 지게차 운전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로 각 사업소당 3명이상 관리요원을 배치·운영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취급조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군에 농경지를 두고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되, 농지규모가 적은 고령자, 여성, 영세농가와 재해 등 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를 우선한다.

제8조(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자는 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를 말하며, 1,652㎡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제9조(사업 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기준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은 1일을 기준으로 1농가에 1대를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과 관리요원이 영농시기 또는 농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임대나 농작업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 대행료가 체납 중인 경우: 체납 금액을 다 납부할 때까지
2. 임대 농기계 반환일을 연간 2회 이상 이유 없이 지체하였거나 임대조건 등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내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통보시까지

제11조(양도 및 대여 금지) 임대한 농기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2조(임대계약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재해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6.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용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7. 그 밖에 농기계 임대 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임대료 및 대행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② 대행료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 수준,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임대료 및 대행료 납부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전용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후 예정된 입고일자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감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15조(임대료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예정된 입고일자보다 일찍 입고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6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17조(임차인의 책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조건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 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8조(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기계 또는 농업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임원, 여성농업인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대사업·대행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대행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준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지소의 명칭 ·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 소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용 평 지 소	평창군 용평면 새터마을길 4-21	대화면(북부지역), 봉평면, 용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 부 지 소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6	진부면, 대관령면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제5조 2항관련)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 내용	임대기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신청사유			
비고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관계 법령 발췌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 1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운반·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7(농업기계 관리대장) ① 법 제8조의6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농업기계를 이전 또는 폐기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은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임대사업·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비용 100만원 예상
 - 100,000원 × 10명 = 1,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연락처	(033) 330 - 1304